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방문요양)

2023. 4.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

1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방문요양]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5항에 근거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함

사례1	OO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6명은 해당 수급자들에게 인지자극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60분미만 제공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2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기준위반 [방문요양]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98호(2020.12.21.)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중략)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9차)(2021.6.28.)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월 1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하게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상담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하는 유선상담 횟수 기준을 충족 시 인정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 상황 포함) 상황만 해당되며, 수급자 상담거부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사례1	고시 제57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수급자를 방문해야 하며, 2021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노인복지센터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지침에 따른 유선상담 인정사유가 아님에도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인력배치추가 가산금을 환수함.